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보장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1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보장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임금채권 자 등)의 주요 내용	4
다. 검토의견	9
2. 관계기관 의견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채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불 해소를 위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대지급금의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여파 및 다수의 무재산 사업주 등의 영향으로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2014.12.31. 신설)에 따르면 임금채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

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곤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터 복귀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는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순위(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 208378 판결)로 그 순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의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음이 합당함.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함(안 제415조의2).

Ⅲ. 검토의견

1.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 보장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위변제하여 가지게 된 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15조의2 단서).

현행	개정안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채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 ----- ----- ----- ----- ----- ----- ----- ----- -----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의 주요 내용

(1)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415조의2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¹⁾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²⁾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채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도 경매절차나 채납처분(강제징수) 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파산재단에 편입하여(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하더

1)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다른 재단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법률 개정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자 중 최우선임금채권자(근로자)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한 간접적인 배당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받게 되었음³⁾.

(2)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권의 경우

한편, 현행법 제415조의2 단서에서는 별채권의 행사나 채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하여 임금채권자 등의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⁴⁾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⁵⁾, 대

3) 대전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나2678 판결

4)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는바⁶⁾,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고 있음.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임금채권자 등의 우선변제권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⑧ (생략)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⑦ (생략)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현행법 제415조의2 단서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의 관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대지급금 채권이 여전히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인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경매절차나 채납처분(강제징수)절차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① 대지급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 제415조의2에서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은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채권 행사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제도 목적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이 담보물권자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은 배제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음⁷⁾.

그러나 대법원은 제415조의2 단서의 취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음⁸⁾.

7) 울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62371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679 판결

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한편, 대지급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에 대하여 ②근로복지공단이 경매절차나 채납처분(강제징수)절차에서 직접 지급(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제415조의2 단서의 의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은 부정하였음⁹⁾.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의2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9)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 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¹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 또한 증가(2019년 4,598억 8,000만원 → 2023년 6,869억 500만원)하였으나, 대지급금 환수율은 오히려 감소(2019년 34.3% → 2023년 30.9%)한 것으로 나타남¹¹⁾.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위변제하여 가지게

10) 임금체불 현황(2024.4.12. 고용노동부)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 도 해 결		사 법 처 리		처 리 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2019년	227,739 (344,977)	17,217	150,798 (203,374)	8,260	71,820 (132,645)	8,301	5,121 (8,958)	656
2020년	196,547 (294,312)	15,830	134,170 (181,113)	8,307	58,643 (106,863)	7,067	3,734 (6,336)	456
2021년	160,304 (247,005)	13,505	111,001 (157,782)	7,403	46,863 (84,759)	5,738	2,440 (4,464)	364
2022년	155,424 (237,501)	13,472	114,318 (161,193)	8,060	39,024 (72,265)	5,041	2,082 (4,043)	371
2023년	185,211 (275,432)	17,845	141,275 (196,866)	11,385	41,212 (73,208)	5,882	2,724 (5,358)	579

11) 2019년~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 및 환수액 추이(2024.8. 고용노동부)

된 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지급금 환수율을 제고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¹²⁾,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지급¹³⁾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 제415조의2 단서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한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당해연도 대지급금환수분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누적 대지급금지급분(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누적 대지급금환수분(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누적 환수율(B/A)	34.3%	32.8%	32.2%	31.9%	30.9%

12) 최근 5년간 임금채권보장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450,707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572,447
수지차(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21,740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98,747

- 13)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 4.~8. (생략)

개정 규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 인정하는 것인지, 그 외에 직접적인 배당수령권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어떠한 권리까지를 보장하는 것인지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대법원은 현행법 제415조의2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지급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하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¹⁴⁾하였는바,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¹⁵⁾,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또한 근

1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15)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¹⁶⁾, 대지급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환수율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배당수령권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제415조의2의 취지는 근로자는 두텁게 보장하되, 대지급금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근로자)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다른 채권과 함께 배당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2권」, 법문사, 2024.1. 1298면.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 중 일부(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별채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특별히 인정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측면임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할 당위성이 부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금 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경우 체불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도리어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415조의2의 입법취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대지급금의 성질 및 재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을 통한 간접적인 배당방식이 아닌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배당요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및 적절한 배당재원 확보를 통한 다수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조정에 관한 고려, 임금체불 시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자금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법 제415조의2 본문은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

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바, 같은 조 단서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 경합이 발생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